



## 학생해외연수학점인정 규정

제정일	2001.10. 1
개정일	2020. 8.10
개정차수	5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외연수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외연수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 1)

제 3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학생해외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 5. 1, 2020. 1. 1.)

② (삭제 2014. 5. 1)

제 4조 (삭제 2014. 5. 1)

제 5조 (삭제 2014. 5. 1)

제 6조 (연수신청) 해외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 기간 내에 주관부서로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제 7조 (연수기간) 학생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09. 6. 1, 2020. 1. 1)

1. 교양교과의 경우 동·하계 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 소정의 과정(2학점 기준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2. 전공교과의 경우 동·하계 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 소정의 과정(2학점 기준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 개정 2020. 1. 1)

제 8조 (개설교과목) 해외연수의 개설교과목은 외국어, 문화탐방, 실습 및 견학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개정 2009. 6. 1, 2020. 1. 1)

제 9조 (학점인정) ① 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서울대학교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10)

1. 영어연수, 중국어연수, 일본어연수 교과목(2학점)으로 하고,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2. 총장이 정하는 교과목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② (삭제 2020. 8.10)

[전문개정 2009. 6. 1]

제10조 (수강신청) ① 연수 종료자는 연수 증빙서류(연수성적표, 연수이수(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② 교양학점 인정의 경우 해외연수신청서로 수강신청을 대체한다. (개정 2009. 6. 1, 2020. 8.10)

③ (삭제 2020. 1. 1)

제11조 (성적평가기준) ① 성적평가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수 성적표 또는 연수이수(수료)증명서의 결과에 따라 “P” (60점 이상)로 평가한다. (개정 2002. 9. 1, 2020. 1. 1)

② (삭제 2002. 9. 1)

제12조 (장학사정 대상) 학생해외연수로 인정된 학점은 정규 학기 이외의 별도 학기로 인정하며 해당 학기 장학사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9. 6. 1, 2020. 8.10)

제13조 (졸업학점) 해외연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성적은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1)

제14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